

지 면허

-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임시영치된 총포의 소지면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연혁과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의 연혁을 비교(별첨 참조)하여 볼 때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영치는 현행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「보관」에 해당됨
- ⑤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재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
- ⑥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·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
- ⑦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당해 업종의 면허
- ⑧ 매년 1월 1일 현재 1년이상 사실상 휴업중인 사실이 입증되는 당해 업종의 면허
 - 국세의 미과세증명,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,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1년이상 휴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

< 사 례 >

- ① 사격선수 개인이 총포소지허가(개인용)를 받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63조 제1항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총을 제외한 총포소지허가에 대하여는 면허세 과세대상임 (세정13407-535, 2000. 4. 20)
- ② 무선국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의 정정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당해 면허의 단순한 주소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시분 면허세 부과대상임 (세정13407-아785, '98. 11. 3)